

「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기능, 위치, 접근성,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다. 등록, 폐관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
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기준 및 제도적 지원 근거가 확립되어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사립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초기 등록 이후 자생력 부족이나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유명 무실하게 방치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도서구입비 등 예산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,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으로 작은도서관이 정보제공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의 위치나 운영시간 등 이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여, 시민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